

『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
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」 제12조의 규
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9월 28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간 연계체계
구축으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시·도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
였고, 최근 인천시가 장애인 학대예방 및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사
후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전담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
개소한 바, 실효적 사업 시행을 위해 조례 정비 필요가 있음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규정에 관련법을 추가하여 규정하고, “장애인 학대”의 용어의 정의를 마련함 함.(안 제1조, 안 제2조))
- 나. “장애인 인권센터”을 “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”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추가 신설하여 규정함.(안 제12조)
- 다. 업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을 마련함.(안 제13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032-440-6222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teasugar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 : ○ 성 명 : 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- 나. 비용추계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및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,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장애인학대”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언어적·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, 경제적 착취,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인권침해를”을 “인권침해 및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장애인 인권센터 설치·운영 등)”을 “(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·운영 등)”으로 하고, 제1항의 “인권센터(이하 “인권센터”라

한다)“를 ”권익옹호기관(이하 “권익옹호기관”이라 한다)“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과 제3항 및 제4항 중 “인권센터”를 각각 “권익옹호기관”으로 한다

제12조에 제2항제5호를 제2항제6호로 하며, 같은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지원에 관련된 업무

제13조 제1항 중 “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”를 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,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----- ----- ----, 「 <u>장애인복지법</u> 」에 따라 <u>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및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,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제1호 ~ 제4호 (생략) <u><신 설></u> 5. 6.	제2조 (정의) ----- ----- . 제1호 ~ 제4호 (현행과 같음) 5. “ <u>장애인 학대</u> ”란 <u>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, 경제적 착취,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</u> 6. 7.
제3조(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)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(이하 “장애인 등이라 한다)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, 장애인 등의 권	제3조(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,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,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.

제12조(장애인 인권센터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장애인 인권센터(이하 “인권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1호 ~ 제4호 (생략)

<신 설>

5.

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

----- 인권침해 및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지원을 -----

제12조(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·운영 등) ① -----

-----권익옹호기관(이하 “권익옹호기관”이라 한다)-----.

② 권익옹호기관-----.

5.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지원에 관련된 업무

6.

③ ----- 권익옹호기관-----.

④ ----- 권익옹호기관---

치·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제13조 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<u>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</u>에 위탁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--. 제13조 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<u>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</u>-----.
--	---

【붙임 1】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■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9 “일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□ 「장애인복지법」

제59조의9(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)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
2.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
3.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4.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
5.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
6.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
7.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

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·보호·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둔다.

1.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
2.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,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
3.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
4.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·운영
5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

③ 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

특별자치도지사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·운영, 상담원의 자격·배치기준,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,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【붙임 2】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 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근거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(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)의 신설에 따른 기능이 동일한 동 조례상의 “인권센터”를 “장애인권익옹호기관”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임.
- 당초 “인권센터” 설치·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 각호의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는 아니 하나,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하도록 한 사항으로 비용이 추가되지 않음.

3. 미첨부 사유

-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하도록 한 사항으로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.

4. 작성자

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김 태 미